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역사문화권정비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근래 건설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변경승인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사업비의 변경 범위를 산정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으로써 변경승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제18조에서 위임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지역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비사업 사업비의 변경 범위 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안 제16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해당 없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범위”를 “범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 ----- ----- ----- ----.
1.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u>범위</u> 에서 변경	1. ----- ----- ----- 범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자) ① (생략) <u><신설></u>	제17조(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u>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u>

<u>②</u> ~ <u>④</u> (생략)	<u>는 단체를 말한다.</u>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청	
연 락 처	(042) 481 - 4872